

## 독점규제법상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고찰

정 완\*

### 국 | 문 | 요 | 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것임을 입법예고하였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당국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동의명령이 적용될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양자만의 합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의명령제도에 대하여 그 개념과 절차, 운용사례 등을 살펴본 후, 기대효과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 독점규제법, 동의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화해결정, 동의심결, 의무부담부, 확약처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 I. 서 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이른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것임을 입법예고하였다.<sup>1)</sup> 이는 지난 2007년 2월 입법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당국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sup>3)</sup>

동의명령제는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독과점적)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sup>4)</sup>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할 때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합의해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동의명령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은 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거쳐 동의명령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담합’은 제외된다.<sup>5)</sup> 동의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 2008.4.15 입법예고된 독점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공시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동의명령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등이다.

2) 머니투데이 2007.2.1자 “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무산” 기사참조.

3) 내외일보 2007.8.6자 “내년 동의명령제 시행 가능성, 불공정거래나 독과점 사건 면죄부 우려” 기사 참조.

4) 독점규제법상의 각종 규제유형에 대하여는 권오승, 경제법(법문사, 2005) 참조.

5)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담합(카르텔) 행위를 한 기업들은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담합행위는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이는 담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담합을 했다가 시정조치 등에 합의해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함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 내부거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여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의명령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2007.6.17자 “공정위, 담합은 동의명령제 적용 안기로” 기사 및 2008년 6월 26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 등에 최종합의” 기사 참조.

동의명령이 적용될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 위원회와 기업 양자만의 합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sup>6)</sup>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공정위에 제안하고 공정위가 사건 신고인, 피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의 제안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등 사후적 처벌보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의명령제도에 대하여 그 개념과 절차 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 II. 동의명령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공정거래사건은 그 성격 자체가 복잡하여 사건을 종료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

6)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동의명령제가 적용되더라도 위법성 판단만 없을 뿐 시정조치 수위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동의명령제의 가장 큰 효과는 조치 완화가 아니라 신속한 사건 종결로 독과점 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며, “동의명령제가 적용돼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관계부처의 반대로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서 담합이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담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외일보 2007.8.6자, 앞의 기사, 참조.

성이 높다. 즉,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많아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sup>7)</sup>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경쟁당국의 위법성 판단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은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사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경쟁당국으로서는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많으며, 기업 입장에서 시정조치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고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sup>8)</sup>

또한, 당해 기업이 위법한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재산형이나 신체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피심인 입장에서는 당장 신체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급격한 기술변화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분야의 경우에 공정거래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소송 등으로 그 확정이 장기화된다면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동의명령이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동의명령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방식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경쟁당국, 즉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사

7)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사실의 확인,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 및 고등법원·대법원 재판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

8) 예컨대, 기업이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위법성 판단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처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 기업 측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 등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측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III. 동의명령제도의 의의 및 개정안의 내용

#### 1. 동의명령제도의 의의

‘동의명령’이란 기업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경쟁당국)에 의한 일차적인 위법 판단이 전제된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일도양단의 위법 판단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과 피심인인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기업)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행위는 중단키로 하고, 정부는 더 이상 당해 사건을 행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행정기관과 피심인인 기업 간에 성립되는 동의명령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동의명령이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완료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의 내용이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확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이 동의명령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3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보장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동의명령은 미국의 당사자주의 분쟁해결시스템(adversarial dispute resolution)의 산물로서 미국의 반독점사건 처리절차에 가장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쟁당국에 의해 심사대상이 된 반독점사건의 약 70%, 정부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소송사건의 약 90%가 바로 이 동의명령에 의하여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독점금지법 및 증권거래법 관련 위반사건 처리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법위반 사건의 상당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sup>10)</sup>에는 동의명령의 신청 및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해 동의명령을 신청하고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의명령 적용대상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정방안이 요구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동의명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동의명령안에 대해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검토가 완료된 동의명령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게 되는바, 합의안을 위원회가 시정조치의 일환인 처분으로서 의결(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합의한 시정방안에 기초한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sup>11)</sup>

9) 신영수,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동의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Vol.19 No.4, 2005 참조.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7.8.7 “동의명령 도입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참조.

11)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이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 IV. 동의명령의 대상과 절차

### 1. 대 상

동의명령의 대상은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실제로 활용되는 분야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정방안이 요구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Consent Ord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M&A다.

EU에는 ‘Commitmen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성카르텔 등 위법성이 강해 행정벌 금(fine)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는 제외된다.

일본의 동의심결제도는 독점적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 관련 심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법 개정(심판절차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의심결 적용범위가 제한됐다.

독점적 상태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독과점 상태인 시장 또는 신규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는 시장 등에서 가격상승, 과다이익 등 폐해가 현저한 경우 영업양도, 주식처분 등을 포함한 경쟁회복을 위한 시정조치를 말한다.

독일의 의무부담부 확약처분(Verpflichtungszusagen) 제도는 대상에 제한규정이 없다.<sup>12)</sup>

### 2. 절 차

피심인이 동의명령의 신청인이 된다. 공정위 조사 또는 심의를 받은 피심인은 최종 심결 전에는 언제라도 동의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는 일차적인 조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12) 황정곤, “[동의명령 특집기고] 동의명령의 대상과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기획칼럼 2007.8.9자 게재문 참조.

통보해 준 이후에 동의명령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TC의 경우, 사건국의 사건 조사중이나 종료 후 피조사인이 합의에 통한 동의명령에 의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FTC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국의 일차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심판개시결정서(안)를 송부받은 후에 신청한다. EU, 독일, 프랑스 등은 조사 등을 마친 후 조사결과(concern)가 피심인에게 통보되면 검토 후 동의명령을 신청한다. 일본은 심판개시결정서가 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정식 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심인이 동의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위법성 판단 및 경제 분석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다양한 시정방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명령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동의명령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시정조치 등을 위한 사건처리절차는 중단하고, 동의명령(안)의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제안된 조치가 경쟁질서의 회복 및 거래당사자·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동의명령(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명령(안)을 잠정 확정하지만, 동의명령(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명령(안)의 수정에 관해 피심인과 협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의명령 절차를 종료하고 통상의 시정조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외국(미국 FTC, EU 등)은 사건담당부서의 실무진(Staff)이 담당 상관 및 관련 부서등과의 조율을 통해 제출한 합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안 제시 등의 협의절차를 거친다.

절차 운영의 투명성 및 시정방안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 이해관계인(신고인, 관련 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 잠정적인 동의명령안 통보 및 의견수렴도 거친다.<sup>13)</sup> 관계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등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잠정적인 동의명령(안)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검토가 완료된 동의명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된다. 각 회의에서 동의명령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시정조치 절차 재개된다. 합의안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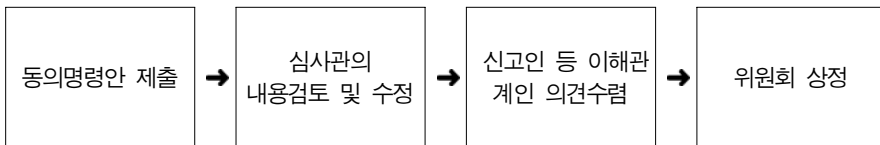
13) 관보게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신고인 및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 등과의 통보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된다. 위원회는 문제가 되었던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므로 동의명령 자체가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명령은 공법상의 시정조치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의명령이 있는 후에 이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동의명령을 한 경우 등이다.

합의 또는 명령(안) 위반하게 되면 동의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U, 독일은 확약처분 불이행시 질서위반 벌금(fine)을 부과하며 별도의 위법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미국은 동의명령 불이행시, Civil penalty를 부과하며 명령안의 준수를 집행하기 위해 FTC는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우리 법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동의심결 불이행시 시정조치불이행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부과한다(형사고발).<sup>14)</sup>

〈구체적인 동의명령 절차 흐름도〉



## V. 주요각국의 동의명령제도 운용사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독점금지법 및 증권거래법 관련 위반사건 처리시 동의명령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법위반 사건의 상당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5)</sup>

14) 황정곤, 앞의 글, 참조.

15) 이하 각국의 동의명령제 운용사례는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335호(2007.4.3) 참조.

## 1. 미국 : 동의명령/동의판결

미국은 반독점사건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별도의 근거규정에 따라 동의명령(concent order) 및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이행하고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피조사인(피심인)과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과 동의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근거규정인 C.F.R. § 232 및 FTC Act § 5, §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명령의 효과에 따르면, FTC는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 및 심사를 종료하며, 피조사인이 확정된 동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FTC 명령안의 준수를 집행하기 위하여 FTC는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의명령 사례로서, FTC는 2004년 6월, 요금을 담합한 뉴멕시코주 로스웰지역 의사협회에 대하여 의사와 보험사 간 개별접촉의 허용, 협회의 특징인이 3년 동안 의사들을 대표하여 어떠한 협상을 하는 것의 금지 등을 동의명령안에 합의하였고, 동의판결 사례로서, DOJ는 2005년 4월에 한국기업 하이닉스(Hynix)의 D램 가격카르텔과 관련하여 유죄 답변과 함께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지불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가격카르텔에 대해서도 3억 달러의 벌금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 〈동의명령과 동의판결 비교〉

| 구 분  | 동의명령<br>(Consent Order)                                                                                                                                                                                        | 동의판결<br>(Consent Decree)                                                         |
|------|----------------------------------------------------------------------------------------------------------------------------------------------------------------------------------------------------------------|----------------------------------------------------------------------------------|
| 담당기관 | 연방거래위원회(FTC)                                                                                                                                                                                                   | 법무부(DOJ)                                                                         |
| 근거규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연방행정절차법)<br>§ 554, Adjudications                                                                                                                                                  |                                                                                  |
|      |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br>연방절차규칙                                                                                                                                                                | Antitrust Procedures and Penalties Act<br>(일명 Turney Act)                        |
| 결정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C가 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피조사인이 합의를 통한 동의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FTC에 통지함</li> <li>• FTC 사건국에서 합의안을 FTC 정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와 피조사인의 합의안을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음</li> </ul>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결정전에 관보에 게재하여 6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li> <li>• 동의명령 결정 이후에 삼배배상소송 등에서 위법성에 대한 추정력이 있는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인정되지 않음</li> </ul> |                                                                                  |

구체적 사례로는, 첫째 사례로, DOJ는 한국기업 Hynix의 D램의 가격카르텔에 관해 유죄답변과 함께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였고(2005.4.),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가격카르텔에 대해서도 3억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였다(2005.10). 둘째 사례로, FTC는 요금을 담합한 뉴멕시코 주 로스웰 지역 의사협회에 대하여 의사와 보험사 간의 개별 접촉 허용, 협회의 특징인이 3년 동안 의사들을 대표하여 어떠한 협상을 하는 것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안에 합의하였다(2004.6).

## 2. 유럽연합(EU) :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EU는 2004년에 이사회 규칙(No. 1/2003) 제9조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화해제도(동의명령)를 도입하였는데, 관련 피조사자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결정으로써 이행약속을 수락하고 사건을 종료케 하는바, 미국과 달리 경성카르텔처럼 명백하게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 중재위원회 상정 등을 통한 화해(안)에 대하여 논의 및 검토 후 시정방안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decision)으로써 이행약속을 수락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EU의 이사회 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제2 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속이행 결정의 효과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피심인 등은 조사대상이었던 특정행위의 중지 등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고, 결정에 기반을 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나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식사건 절차를 진행하며, 결정으로 부과된 이행안(피심인이 약속했던)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EU의 약속이행결정 사례로서,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6월 유럽에서의 코카콜라의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배타적거래의 폐지, 판매목표 및 리베이트의 금지, 끼워팔기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 일본 : 동의심결제도

일본은 범위반 행위의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동의를 전제로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9년 동의심결제를 도입하였다(구 사적독점금지법 제53조의3).

일본의 동의심결제도의 주요절차는 우선, 심사관 측의 심판개시결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에 기재된 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면서,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하여 이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결을 받는 취지를 문서로 신청한다.

피심인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후 공취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된 구체적 조치와 같은 취지의 심결(동의심결)을 한다.

2006년 1월 시행된 일본 공취위의 심사절차 개편에 따라 일반적인 동의심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독점적 상태 배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동의심결제도가 가능하다(사적독점금지법 제65조).

일본 동의심결제도의 사례로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005년 4월 고무제조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사건에 대하여 입찰담합행위 취소 및 향후 재발방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심결을 한 바 있다.

### 4. 독일 : 의무부담부 확약처분(Verpflichtungszusagen ; commitments)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 7차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동의명령과 유사한 의무부담부 확약처분 제도를 신설하였는데(제32조의b), 입법의 원형은 EU 이사회 규칙(No.1/2003) 제9조로서 미국의 동의명령과 유사한 제도로 평가된다.

독일의 의무부담부 확약처분의 절차는 독일 카르텔청의 절차개시를 통해 카르텔청의 잠정판단에 따라 존재하는 우려(Bedenken ; concern)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면 피심인은 시정조치에 관한 확약표시를 연방카르텔청에 할 수 있다.

카르텔청은 피심인의 의무부담부 확약을 검토한 후 시정방안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속력을 선언하고 절차를 종료하며, 피심인이 불이행시 카르텔청은 과태료(fine)를 부과하며 별도의 위법 확인절차에 들어간다(제32조의b 제2항, 제81조 제2항, 제4항).

## Ⅵ. 동의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1.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

동의명령제도의 운용방식을 놓고 법무부·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동의명령 사건 내용을 사전에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검찰 총장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조문을 수정하였다.<sup>16)</sup>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의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동의명령 불가의견을 낼 경우 이에 반하는 동의명령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인바, 이는 검찰이 갖고 있는 ‘고발요청권’ 때문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동의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자료 일체가 검찰에 통보된다. 만약 검찰이 검토했을 경우 ‘기소 가능’ 의견을 냈는데도 그에 반하는 동의명령이 이뤄질 경우 검찰이 언제라도 고발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하였다고 한다.<sup>17)</sup>

첫째,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중대·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협의한다.

16) 이 수정안 제시는 최근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책을 동원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굴복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 2007.10.8자 “동의명령제 도입취지 무색... 공정위, 검찰에 결국 백기” 기사 참조.

17) 2008년 6월 26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 등에 최종 합의” 참조.

## 2. 동의명령제도의 실효성

동의명령제는 기업과 공정위의 합의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제재 없이 종결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동의명령으로 형사적 처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의명령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기업들의 동의명령 신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은 동의명령 신청으로 관련 혐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될 경우 기업이 자진해서 치부를 드러내고 소비자피해 회복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고,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는 기업결합심사를 제외하고는 동의명령제도의 활용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의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동의명령 제도 이용에 따라 받게 될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여 제도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무거운 과징금을 물린다거나 또는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하게 된다.

동의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의명령 신청으로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 3. 한미 FTA 협정문 위반 가능성

아울러 한·미 FTA 협정문 위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동의명령제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이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모든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정도이다. 그런데 한국이 동의명령 절차에서 검찰이 깊숙이 개입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곧 검찰이 반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는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18) 공정거래위원회 2007.9.7 보도자료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참조.

#### 4. 소비자보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sup>19)</sup>

시민단체와 학계 측은 “동의명령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신고인의 법적 지위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동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인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sup>20)</sup>

#### 5. 수사권과 전속고발권 문제

법무부 측은 “동의명령제도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의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으나, 학계측은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무부 측이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명령 발동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수정하였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보완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라도 형사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법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면 모든 기업들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마저

19) 참고로, 공정위 소관 표시규제 관련 법령에서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35호 2007. 04. 03

20) 공정거래위원회 2007.9.7 보도자료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참조.

도입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추후 독점규제법을 손질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sup>21)</sup>

## 6. 부당한 공동행위의 포함문제

동의명령제도는 담합을 비롯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sup>22)</sup> 동의명령제도 운용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청은 허용하되 판단과정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만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제도에서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나 그 입증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의명령을 도입하여 간접증거, 즉 정황사실에 대한 입증노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sup>23)</sup>

## 7. 위법혐의 기업에 대한 면죄부 제공 우려

동의명령제는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당국이 기업과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21) 매일경제 2007.10.8자 “법무부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충돌, 기업고발권 독점 둘러싸고 갈등 확산” 참조.

22)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담합행위는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담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담합을 했다가 시정조치 등에 합의해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함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 내부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여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의명령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2007.6.17자 “공정위, 담합은 동의명령제 적용 안하기로” 기사 및 2008년 6월 26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 등에 최종합의” 기사 등 참조

23) 홍미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2006), 196쪽 참조.

동의명령이 적용되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

## 8. 제도운영의 투명성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합의하여 당해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선에서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여지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의명령의 운용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의 각종 보완조치, 예컨대 의견수렴기간 연장 등의 각종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VII.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경쟁당국 입장에서 볼 때 동의명령제의 도입은 공정거래사건의 처리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경쟁당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시장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시장경제가 확립된 국가일수록 경쟁당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당국의 역할 확대는 예산과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당국은 예산 및 인력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사건처리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경우 성격상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당국의 부족

한 예산 및 인력으로는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경쟁당국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명령제는 경쟁당국이 장기간의 소송 등에 투입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동의명령제는 오래전부터 기업 측에서 도입을 원하던 제도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 · 기업 ·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기업은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된다. 즉, 기업은 소송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임직원들은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의명령제의 도입은 공정거래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에 유무형의 비용절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장기간의 소송 대신에 동의명령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면, 기업은 사건의 종결 여부를 일찍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건처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기밀 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사업상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VIII. 결 어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동의명령이란 사건의 조사.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였으며,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8일 한 · 미 자유무

역협정(FTA) 제8차 협상의 경쟁분과에서 모든 내용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2006년 6월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완전 타결 분과가 나온 것이다.<sup>24)</sup>

정부는 오래전부터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각종 선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동의명령제의 도입 검토 배경에는 정부는 對기업정책에 있어서 기업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업 활동이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위법성 판단보다는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자세를 갖겠다는 취지인 것이다.<sup>25)</sup>

2008년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동의명령제도 도입안의 주요내용은 범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이른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검찰총장 협의 등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고, ‘담합 및 범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 기대효과로서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안고 있으나, 이른바 동의명령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기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구제기능이 개선될 것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충실한 의견조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sup>26)</sup> 입법을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4) 한·미 양측이 경쟁분과에서 타결한 내용은 첫째, 경쟁법 집행을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둘째, 재벌 관련 각주의 삭제, 셋째,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설립·유지, 넷째, 독점기업 상업적 고려의무 예외, 다섯째,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다.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35호 2007. 04. 03

25)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06년에 발표한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동의명령제 도입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무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도입이 유보되었던 것이다.

26) 동의명령제도는 이미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 그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이 중요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 도약을 위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 61쪽 이하 참조.

## 참고문헌

- 고동수,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35호(2007.4.3)
- 권오승, 경제법(법문사, 2005)
- 손인옥, “동의명령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경쟁저널 제131호(2007.3)
- 신영수,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동의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Vol.19 No.4, 2005
- 홍미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2006)
- 황정곤, “[동의명령 특집기고] 동의명령의 대상과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기획칼럼 2007.8.9자 게재문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08.7.16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2008.4.15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도자료 2007.9.7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명령 도입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7.8.7
- 공정거래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 경제도약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 머니투데이 2007.2.1자 “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무산” 기사
- 내외일보 2007.8.6자 “내년 동의명령제 시행 가능성, 불공정거래나 독과점 사건 면죄부 우려” 기사
- 연합뉴스 2007.6.17자 “공정위, 담합은 동의명령제 적용 안하기로” 기사
- 한국경제 2007.10.8자 “동의명령제 도입취지 무색 · 공정위, 검찰에 결국 백기” 기사
- 매일경제 2007.10.8자 “법무부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충돌, 기업고발권 독점 둘러싸고 갈등 확산” 기사

## A Study of the Consent Order under Antitrust Law

Choung, Wan\*

It is 27 years since the antitrust law was introduced into Korea. Until now, there have been continuous and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antitrust system, and the efforts are considered to be comparatively successful. However, previous trials for development of the system have been mainly concentrated on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reform has not seen to be so sufficient.

Especially, as the number of the cases which have been brough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procedural improvement for not only due process but efficient treatment of flocking cases is rising as a pending task around the enforcement authority.

In this context, what the KFTC is carefully considering introduction is so called the 'Consent Decree' or 'Consent Order'. It is known as a mechanism in which the relevant parties can quickly settle the case at issue, on condition that the enforcement promise not to investigate or accuse against the undertaking, on the other hand the undertakings agree to stop the challenged practices. In fact, it is well known that most of antitrust cases in the U.S. have been settled through the Consent Decree.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 into Korean antitrust procedure, however, detailed analysis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actual use is firstly required. Because it has formed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regulation of the U.S. and have various incentives which cause undertakings to utilize the system,

---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yunghee University, Ph.D. in Law

❖ Keywords : Consent Order, Consent Decree, Unfair Trade Committee, Antitrust Law, Commitments, Commitment Decision, Unfair Trade